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서

계	시 정		건 의	
	공통	부서	공통	부서
175건	43건	4건	52건	76건



음 성 군

목 차

□ 총 괄	2020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총괄 현황표	1
-------	-------------------------------	---

【기획감사실】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3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4
□ 공통21-건의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4
□ 공통26-시정	예산변경내역	5
□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6
□ 공통 -시정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준수	6
□ 부서1-1-건의	1. 군수공약사업 현황(건강의탑 설치사업)	7
□ 부서1-2-건의	2. 군수공약사업 현황(세무출장소 운영)	8
□ 부서1-3-건의	3. 군수공약사업 현황(지연사업-원남~혁신도시간 지방도 조성사업)	9
□ 부서2-1-건의	1. 제안제도 운영실적(기업체 휴·폐업 관리)	10
□ 부서2-2-건의	2. 제안제도 운영실적(군민청원제도 개선)	11
□ 부서2-3-건의	3. 제안제도 운영실적(군정제안)	13
□ 부서2-4-건의	4. 제안제도 운영실적(기업체홍보관 지원)	13
□ 부서 3-건의	민간위탁	14

【혁신전략실】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15
□ 부서1-1-건의	1. 인구증가시책(지속가능한 인구늘리기 대책 수립)	15
□ 부서1-2-건의	2. 인구증가시책(전입지원금 행복페이 지급)	16
□ 부서1-3-건의	3. 인구증가시책(가족사랑 사진 및 수기 공모전 시상자 확대)	16

【자치행정과】

□ 공통21-건의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7
□ 공통30-건의	각종 협정 체결 현황	18
□ 부서 1-건의	일반직 등 공무원 현황	18
□ 부서 2-건의	1년 이내 전보 현황	19
□ 부서 3-건의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19
□ 부서 4-건의	민간위탁	20

【미디어정보과】

□ 공통10-건의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	21
□ 공통28-건의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	21
□ 부서 1-건의	홍보용 영상자료 현황	22
□ 부서 2-건의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	22

【평생학습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23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이상 설계변경내역	24
□ 공통14-시정	공사비 2천2백만원 이상 사업현황	24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25
□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25
□ 부서 1-건의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현황	26
□ 부서 2-시정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육성기본계획 추진실적	26

【주민지원과】

□ 공통18-건의	국도비 반환금 내역	27
□ 공통19-건의	불용액 발생현황	27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28
□ 부서 1-건의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수단 위탁현황	28

【사회복지과】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29
□ 공통 5-시정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29
□ 공통 6-건의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현황	30
□ 공통 9-건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30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31
□ 공통13-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31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2
□ 공통26-시정	예산변경내역	32
□ 부서 1-건의	시니어클럽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	33

【문화체육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34
□ 공통 9-건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35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36
□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37
□ 공통34-건의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현황	37
□ 부서 1-건의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	38
□ 부서 2-건의	민간위탁	39

【세 정 과】

□ 부서 1-건의	축산물공판장 각종 세금 부과 및 납부현황	40
□ 부서 2-시정	군 금고 검사 결과 및 조치사항	41

【회 계 과】

□ 부서 1-건의	관급자재 구입관련	42
-----------	-----------------	----

【민 원 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43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43

【경 제 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44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44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 변경 내역 및 사유	45
□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45
□ 부서 1-건의	관내 기업체 휴폐업 현황	46
□ 부서 2-건의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46
□ 부서 3-건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현황	47
□ 부서 4-건의	음성천연가스발전소 추진현황	47
□ 부서 5-건의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49
□ 부서 6-건의	지반침하지역 유지·보수 및 개선	50
□ 부서 7-건의	전통시장 고객센터 화장실 개방	50
□ 부서 8-건의	민간위탁	51

【농 정 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52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52
□ 공통29-건의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	53
□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53
□ 부서 1-건의	귀농귀촌지원	54
□ 부서 2-시정	귀촌귀촌 지원현황	54
□ 부서 3-건의	도정시설 설치	55
□ 부서 4-건의	개별 육묘장 지원 등	55
□ 부서 5-건의	민간위탁	56

【축산식품과】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57
□ 공통12-시정	공사비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57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58
□ 부서 1-건의	AI·구제역·돼지열병	59
□ 부서 2-시정	관내저수지 관리	59
□ 부서 3-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60
□ 부서 4-건의	축산악취개선사업	61
□ 부서 5-건의	양봉농가 등록의무 홍보	62
□ 부서 6-건의	로컬푸드 상품 규격화 등	63

【산림녹지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64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64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65
□ 공통13-시정	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65
□ 부서 1-건의	수계약 자연휴양림 운영	66
□ 부서 2-건의	도시공원 유지관리 현황	66

【환경과】

□ 공통 5-건의	각종단체의 보조금 지급	67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내역	67
□ 공통20-건의	행정심판, 소송, 현황	67
□ 부서 1-건의	환경관련시설 민원접수처리내역	68
□ 부서 2-건의	야간투시경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68

【청소위 성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69
□ 공통19-건의	불용액 발생현황	70
□ 부서 1-건의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수거실적	71
□ 부서 2-건의	외식업소 지원현황	71
□ 부서 3-건의	기타<광역쓰레기매립장 대체부지>	72
□ 부서 4-건의	민간위탁	73

【균형개발과】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74
□ 공통13-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74
□ 공통16-건의	1년이상공사중지	74
□ 부서 1-건의	음성읍민회관 앞 데크 유지보수	75
□ 부서 2-건의	기타<소규모사업 용역비 절감대책>	75

【기업지원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76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76
□ 공통12-시정	공사비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76
□ 공통13-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76
□ 공통 -시정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준수	77
□ 부서 1-건의	산업단지 추진현황	77
□ 부서 2-건의	성본산업단지 현황	77
□ 부서 3-건의	대풍2산업단지 추진현황	77

【안전총괄과】

□ 공통23-건의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78
□ 부서 1-건의	풍수해보험 홍보실적	78
□ 부서 2-건의	사업 시행 시 신속 진행 필요	78
□ 부서 3-건의	관내 업체 우선 입찰 지원	79
□ 부서 4-건의	「음성군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세부사항 마련 필요	79

【건설교통과】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80
□ 공통 9-건의	의정활동 지적사항	80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80
□ 공통13-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81
□ 공통14-건의	2천2백만원 이상사업	81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82
□ 공통26-시정	예산변경내역	82
□ 공통29-건의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	83
□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83
□ 부서 1-건의	기타<삼생~군자간 농어촌도로>	84
□ 부서 2-건의	기타<대소면 도로개설 사항>	84
□ 부서 3-건의	민간위탁	85

【도시과】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86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87
□ 공통 5-시정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87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88
□ 공통 9-건의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88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89
□ 공통13-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89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89
□ 부서 1-건의	민간위탁	90

【건축과】

□ 부서 1-건의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91
□ 부서 2-건의	붕괴위험 건축물 안전 관리	91
□ 부서 3-건의	공동주택 지원 관련	92
□ 부서 4-건의	빈집정비 관련	92
□ 부서 5-건의	법규재정비(옥외광고물법)	93
□ 부서 6-건의	민간위탁	94

【보 건 소】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95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96
□ 공통13-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96
□ 부서 1-건의	기타<보건진료소장 지원근무 배제 검토>	96
□ 부서 2-건의	민간위탁	97

【농업기술센터】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98
□ 공통 5-건의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99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99
□ 공통21-시정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00
□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100
□ 부서 1-건의	농촌 고소득작물 실증재배	101
□ 부서 2-건의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	101
□ 부서 3-건의	병해충 방제 실적	102
□ 부서 4-건의	미생물 보급 실적	102

【수도사업소】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103
□ 공통12-시정	공사비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104
□ 공통13-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104
□ 공통26-시정	예산변경내역	105

【시설관리사업소】

□ 공통 3-건의	행정재산 현황	106
□ 공통12-시정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107
□ 공통13-시정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107
□ 부서 1-건의	시설별 임대 내역 등	108
□ 부서 2-건의	기타<축구장 내 야구연습공간 검토>	10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조치결과 현황

부서별 조치내역 총괄표

실과소	조치결과						실과소	조치결과					
	계	시정		건의		비고		계	시정		건의		비고
		공통	부서	공통	부서				공통	부서	공통	부서	
총 계	175	43	4	52	76								
기획감사실	14	3		3	8		산림녹지과	6	2		2	2	
혁신전략실	4	1			3		환경과	5	1		2	2	
자치행정과	6			2	4		청소위생과	6			2	4	
미디어정보과	4			2	2		균형개발과	5	2		1	2	
평생학습과	7	3	1	2	1		기업지원과	8	3		2	3	
주민지원과	4	1		2	1		안전총괄과	5			1	4	
사회복지과	9	5		3	1		건설교통과	12	4		5	3	
문화체육과	7	1		4	2		도시과	9	4		4	1	
세정과	2		1		1		건축과	6				6	
회계과	1				1		보건소	5	2		1	2	
민원과	2	1		1			농업기술센터	9	2		3	4	
경제과	12	1		3	8		수도사업소	4	3		1		
농정과	9		1	4	4		시설관리사업소	5	2		1	2	
축산식품과	9	2	1	1	5								

기획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 5-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 아울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 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2022년도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일부개정함. [기획감사실-2736호(2022. 2. 17.)] - 보조금 교부조건(표준안) 정비 -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권고 조건 반영 ⇒ 10.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급적 관내 업체 물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2022년도 음성군 지방보조금 업무 매뉴얼」 개정본 송부함. [기획감사실-2907호(2022. 2. 22.)]	

기획 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바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팀장과 부서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자료 제출 시 잘못된 자료가 없도록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음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건의)	○주민참여예산의 본질을 흐리지 않도록 마을숙원사업이나 개별적인 민원사항 처리가 아닌 읍면에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여 주기 바람. ○주민참여예산 선정 시, 금액 및 사업 내용과 무관하게 단순 투표참여율을 높여서 다수표를 득하였을 경우 우선 순위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바,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공고 시 평가방법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개선하여 공지하여주기 바람.	○각 읍면 예산학교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 위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발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찾아가는 예산학교 신설·운영 '22. 5~6월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시 필요한 투표절차 등 제안사업의 선정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향후계획 - '23년 주민참여예산 계획 및 신청 공고 '22. 7~8월 - 제안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선정 '22. 9월 - '23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22. 10월	

기획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예산변경내역 (공통26-시정)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 극히 제한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하나, 예측하지 못한 재원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아울러 예산편성 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업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계목의 변경이나 항목간 금액조정 등 최소한으로 실시하겠음. [조치계획] ○예산편성 교육시 예산변경 최소화 방침 교육 실시 <2023년 예산편성 지침 시달교육> -일 정: 2022. 9. (예정) -주요내용: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 개정사항 ※ 추경예산 편성시에도 관련 교육 실시 ○부서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도 사업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변경 사전 방지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음연도 보조금감액을 적용하여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정산이 제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년도 정산지연사업에 대한 ’22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감액 반영 등 완료 ※ 정산지연 사업: 6건, 133백만원 - 1건 감액 반영(음성문화원 운영비 지원) - 3건 사업 폐지(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3건) - 2건 보조사업자 지원 배제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 등 2건) ○향후계획 - ‘21년 사업 지방보조금 정산현황 점검 ’22. 4월 - ‘21년 사업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22. 5월 - ‘23년 본예산 편성 시 반영 ’22. 10월	
○지방재정법 관련규정 준수 (공통 -시정)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예산 편성 후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사례가 있음. 추후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기 바람.	○우리군 2021년도 출자·출연금 예산: 총 3개 사업 1) (재)음성군장학회 출연금(‘20. 11. 20. 의결)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20. 10. 28. 의결) 3) (재)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17. 11. 27. 의결)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출자금 또는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 사전의결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겠음.	

기획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군수공약사업 현황 -건강의탑설치사업 (부서1-1-건의)	○관내 미세먼지 오염측정기 확대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다만 예산에 한계가 있고, 산업단지 및 공장이 관내 전역에 분포하여 있는 만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설치지역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순차적으로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시켜주기 바람. 아울러 측정기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된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합리적 배치가 필요할 것임.	○군수공약사업 중 하나인 “건강의 탑 설치사업”은 음성읍 신천리 지역에 사업비 250백만원을 투입하여 2019년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관내 대기 측정망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하여 안내 전광판을 운영하여 주민에게 실시간 정보 전달을 하고 있음 ○대기측정망은 충북도내 총 33개소로 이 중 도시 대기측정망은 군단위의 경우 평균 2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음성군은 2018년 음성읍, 2020년 소이면에 설치하여 현재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대기측정망의 추가 설치를 위하여 2021년 국가보조사업 신청을 하였으나 타당성 부족(도시대기측정망 2개소, 교외대기측정망 1개소 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선정되지 않았음 ○차량 및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차량과 시스템(이동식대기측정망) 1대를 사업비 616백만원 투입하여 2021년 시설·장비 구비 완료하였으며, 2022년부터는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따른 측정이 가능함 ○참고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교외대기측정망 1개소를 금왕읍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환경과

기획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군수공약사업 현황 - 혁신도시 세무지서 설치관련 출장소 운영관련 (부서1-2-건의)	○ 혁신도시 세무지서 설치관련 두군데 출장소가 폐쇄되면서 세무관련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음 ○ 세무출장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출장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 개청('20.4.3.)후 인력부족 등의 사유로 음성·금왕 출장민원실이 폐쇄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 국세·지방세 관련 민원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을 군청 내에 설치 운영하고자 함. ○ 그간 추진상황 -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인력 배치 건의 충주세무서 방문: '20. 6월, '21. 3월 - 행정안전부 국세 인력 증원 요청 방문: 2회('20. 6월, 12월) - 국회 지원 건의 방문: 2회('20. 6월, 12월) - 음성, 진천 각 1명씩 2명 증원 요청하여 1명이 증원 결정 - 도 행정부지사⇔대전지방국세청장 면담: '21. 7월 - 통합민원실 운영 인력 배치 건의 충주세무서 방문: '22. 2월 (충주세무서 '22. 2월 현재 결원으로 통합민원실 운영 인력 배치는 어렵다는 입장임.) ○ 향후계획 - 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안부, 충주세무서 등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이 설치·운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세정과

기획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군수공약사업 현황 -지연사업 관련 (부서1-3-건의)	○원남 - 혁신도시 간 지방도는 향후 소방복합치유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라도 정비사업이 절실한 구간임. 도로선형이 불량하고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선형개량 및 도로구조개선이 요구되는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해당 지방도 정비사업을 원만히 진행하도록 하고 의료 및 문화 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주기 바람.	○해당노선은 현재 통행량이 적어 사업성 시급성이 낮다는 사유로 구조개선사업 추진이 미진한 상태임. ○지방도 선형개량사업을 충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고 정비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	건설교통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제안제도 운영실적 -기업체 휴·폐업 관리 (부서2-1-건의)	○ 공장 및 기업 운영에 관심이 있는 주민에게 휴폐업 또는 경매로 인하여 비어있는 공장에 대한 각종 정보(위치, 면적, 가능업종, 매입가 등)를 제공하기 위한 자료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임차·매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여주기 바람.	○ 현재 음성군 홈페이지 <기업체 현황>란을 통해 관내 입주업체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월 1회 이상 기업체정보(가동, 건설, 휴·폐업 등)를 수시로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통해 신속한 입주정보를 제공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다만,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은 각 산업단지별 기본 계획에 적합해야 처분 가능하며, 관리기관이 법률에 따라 양도가격, 양도대상 등을 정하여 처분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음. ○ 처분대상인 입주기업 정보를 주기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는 사실상 어려우나, 매각공고 등 처분에 따른 정보공개사항을 적극 안내하여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관내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기업 중 휴폐업 처분 공장 실태 등을 파악하여 타 지역 이전기업 유치 및 대체 공장입주를 통해 휴폐업 공장 최소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제과 기업지원과

기획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제안제도 운영실적 - 군민청원제도 개선 (부서2-2-건의)	○ <u>군민청원제 운영관련 성립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한 바가 있으나 아직 군민청원 성립기준을 충족하거나 동의 방법이 까다롭다</u> 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립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동의방법 절차 간소화 -군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로그인 후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군민청원제 성립기준 완화 관련 - 군민청원제(군민e랑 톡톡)는 군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을 위해 2020.3.2. 성립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음성군 인구의 0.3%)으로 완화하였으며, - 그동안 청원이 성립된 건은 없었으나 미성립된 건의도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답변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음. - 다만, 군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공감하는 건의에 대해 군수님께서 직접 답한다는 취지에 맞게 성립 기준을 정한 것으로, 현 기준보다 성립기준을 더 완화하는 것은 청원접수 건수, 인구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재검토하겠음. - 아울러, 군민청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청원글 등록 시 군청 누리집 팝업창 등을 활용하여 군민이 보다 쉽게 청원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민원과

기획 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제안제도 운영실적 -군민청원제도 개선 (부서2-2-건의)	○ 군민청원제 운영관련 성립기준을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조정한 바가 있으나 아직 군민청원 성립기준을 충족하거나 동의 방법이 까다롭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성립기준에 대한 완화가 필요함과 동시에 동의방법 절차 간소화 -군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동의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인증이나 아이핀 인증을 통한 비회원 로그인 방식과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한 로그인 방식-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 군민청원 홈페이지 로그인 방식 개선 관련 - 음성군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휴대전화 인증,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회원가입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으며, - 해당 규정에 따라 군민청원제와 같이 실명인증이 필요한 글 등록은 휴대전화, 아이핀을 통해 본인인증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운영중이며, -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한 로그인은 단순 게시물 보기, 댓글 기능 등으로 이용이 제한되어 현재 음성군 홈페이지에는 소셜미디어 계정 인증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 -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는 본인인증 방법 확대 및 변동 추이에 따라 소셜미디어 계정 로그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음.	미디어 정보과

기획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제안제도 운영실적 -군정제안 (부서2-3-건의)	○ 제안제도 관련되어 제안 채택·심사가 11월에 이루어지고 12월에 포상을 하면 이듬해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기에 늦은감이 있음. 비예산 정책 건의를 제외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채택·심사 시기를 앞당겨 사업에 대한 검토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익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2021년 공모제안은 상반기(6월), 공무원제안은 하반기(10월)에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공모제안은 4월, 공무원제안은 7월 실시하여 채택여부를 본예산 편성 전 결정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제안제도 운영실적 -기업체홍보관 지원 (부서2-4-건의)	○ 음성군 기업체 홍보관을 만들어 각 읍면에 흩어져 있는 기업체의 물건을 살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리고, 기업체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람.	○ 기업체 홍보관 건립은 투입예산 대비 홍보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장기적 검토과제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향후 정부공모 사업에 응하여 추진하겠음. ○ 기업체에는 현재 수출보험, 제조물 책임보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기업지원 시책을 추가 발굴하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기업지원과

기획 감사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민간위탁 (부서 3-건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전체 민간위탁 기관의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 감사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민간위탁사무 감사 관련 TF팀 구성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29조(사무감사)제1항이 '매년 1회 이상 감사'에서 '자체(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하여 감사'로 2021. 12. 27일 개정됨. - 이에 따라 별도 TF팀 구성없이 부서 자체(종합) 감사 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민간위탁 사무 감사에 철저를 기하겠음.	

혁신전략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공사설계 시 검토에 철저를 기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인구증가시책 (부서1-1-건의)	○출산장려금 및 전입지원금 등 인구증가 시책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효과가 미흡함. 큰 틀에서 정책방향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장기적이며 지속 가능한 인구늘리기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현금성 지원의 인구증가시책은 인구를 늘리는 데 분명 한계가 있으며, 인구감소는 어느 한 분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함. 이에 1) 도시개발 및 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u>주거기반 조성</u> 2) 문화·체육·교육·의료 등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u>생활인프라 확충</u> 3) 투자유치를 통한 우량기업 유치로 <u>양질의 일자리 창출</u> 4) 소이, 원남, 생극의 전략사업 추진을 통한 <u>지역균형발전</u> 등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음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군정 전반에 걸쳐 촘촘한 인구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인구증가시책 (부서1-2-건의)	○인구증가시책으로 전입세대에 음성 행복페이를 지급하는 것과 같이, 전입자 전입지원금도 현금이 아닌 행복페이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전입세대 뿐만 아니라 전입학생 및 대학생, 기업체 전입자에 대한 전입지원금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음성행복페이로 지급하겠음.	
○인구증가시책 (부서1-3-건의)	○가족사랑 사진 및 수기 공모전 시상자 확대 당부	○공모전 시상을 사진 및 수기 각각 10명(최우수 1, 우수 2, 장려 2, 입선 5)에 대해 하고 있음. 군민의 참여 확대 및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해 시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자치행정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건의)	<음성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대표적 사례로 복합발전소 반대추진위와 군과의 갈등으로, 관계부서 갈등조정 협의회에서 협의가 안 되어 음성군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회의를 소집,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중재하여 당사자간 의견 차이를 좁히는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음성군 갈등관리심의 위원회 위촉기간 만료(22. 2. 16.)에 따른 위원을 재위촉(위촉일: 22. 2. 17.) 했으며, *임기: 22. 2. 17. ~ 24. 2. 16. ○향후 군정주요 시책 추진 시 군과 주민 간 갈등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또한, 천연가스발전소 건의 경우 담당부서인 경제과에서 반투위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안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는 등 갈등 해결에 노력하고 있음.	

자치행정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협정 체결 현황 관련 (공통30-건의)	○북한이탈주민이 관내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미준수 등의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는바,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전문가집단인력풀을 활용하여 MOU를 체결하는 등 이탈주민이 그 도움을 받아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관내 북한이탈주민이 행정절차 미준수 등의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일선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집단인력풀(ex 대한 법률구조공단-음성지소)과 상반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개최 시 MOU 체결을 추진하는 등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 일반직 등 공무원 현황 (부서 1-건의)	○코로나19 대응이나 현안사업 등으로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계획한 바대로 인력운영의 방향이 그대로 추진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인력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결원으로 인한 인력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기 바람.	○2022년 충원계획 수립 시 결원 및 결원예상 인원 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결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자치행정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1년 이내 전보 현황 (부서 2-건의)	○1년 이내 전보현황 중 6개월 이내 인사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개선하려는 의지가 보여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바, 지속적으로 노력해주시어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바람.	○업무의 연속성,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 이내 전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부서 3-건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참여 저조 프로그램 조정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읍면 회의 시 전달하기 바람.	○주민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프로그램 조정 및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할 수 있도록 각 읍면에 협조 공문 발송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4-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매년 자체적으로 사무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2021. 12. 27.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 감사)를 자체(종합)감사 시 감사를 실시도록 현실적으로 개정하였으며, 조례 제29조의2(회계 감사)를 추가하여 10억원 이상인 사무의 경우 매년 회계 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사업비를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음. 또한, 주기적으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해 나가겠음.	

미디어정보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용역의뢰 사업현황 (공통10-건의)	○ 지역정보가 부족한 귀농·귀촌자에게 각 읍면 빈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바람.	○ 홈페이지 게시 예정 - 미디어정보과: 빈집 데이터 공개 가능한 게시판 생성 - 건축과: 2022년도 빈집 실태 조사 실시 및 공개 동의 빈집 데이터 게시	
○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추진 현황 (공통28-건의)	○ 실과소별로 운영하는 유튜브 계정을 파악하여 음성군 공식 유튜브를 통해 연계 홍보하거나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음성군 공식 채널 메인 페이지 최상단 추천 채널에 각 실과소 유튜브 채널 연계 링크 게시 완료. ○ 추후 실과소별 채널과 연계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 추진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홍보용 영상자료 현황 (부서 1-건의)	○군정 홍보 동영상 및 전달사항, 군정뉴스 등을 청사 승강기뿐만 아니라 각 읍·면 민원실 TV, 시장골목 모니터 내 지속적인 송출하기 바람.	○읍·면 민원실 TV, 금왕 무극전통시장 등 시장골목 모니터 내 군 홍보 동영상, 인터뷰 영상 등을 지속적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군정홍보 콘텐츠 제작 (부서 2-건의)	○음성군을 홍보할 수 있는 가장 큰 콘텐츠인 품바축제 및 명작축제의 제작동영상을 업체로부터 제공받아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에 담아 주기적으로 홍보하여 주기 바람.	○음성을 대표하는 축제 영상을 제공받아 인터넷 방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종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 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 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주기 바람.	○ 글로벌 교육랜드 주차장 조성완료에 따라 5필지 지목변경 신청 [평생학습과-16120(2021. 12.22.)] - 지목변경 처리 완료 후 토지 합병 진행 ○ [민원과-833(2022. 1. 7.)] 지적공부 정리완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 시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겠음.	
○ 공사비 2천2백만원 이상 사업현황 (공통14-시정)	○ 반기문 평화기념관 주차장 경관 조성 공사 관련 준공 후 고사된 부분의 보식 및 주차장 방치 폐기물 철거 시정 요구함.	○ 고사된 관목 보식: 2022년 봄 해동 후 조치 예정 ○ 방치 폐기물 철거: 조치 완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실제 지출된 금액(보조사업예산)이 표기되지 않아 감사자료 하여금 혼란을 주었음. 별도로 추가보고한 사항과 제출서류가 일치하지 않은 바가 있어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서식의 일부 변경이 요구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보조금에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됨을 향후 감사자료에 작성하겠음.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기 바람.	○해당 보조사업자가 추후 보조금 사업 신청 시 보조금 감액 등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제재 조치하겠으며, 보조금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음성교육지원청 교육경비 지원 현황 (부서 1-건의)	○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군세수입의 5%이하로 교육경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음성군 나름대로 지원이 잘 되고 있으나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쓰시어 교육경비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 교육경비지원예산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작년보다 13억원 늘어난 44개사업에 29억원 지원할 예정임(본성고 다목적강당사업 및 고교 학점제 지원사업 등) 앞으로도 교육경비지원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참고> *교육경비 지원실적 및 지원금액 - 20년: 21억원, 21년 16억, 22년: 29억원(예정) *교육경비 보조기준액 비율 - 20년 비율: 3.69%, 21년: 4.09% 22년: 4.76%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육성기본 계획 추진실적 (부서 2-시정)	○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부분 관련, 집행액 기재내용만으로는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감사자료 하여금 이해할 수 있게끔 비교란에 목별로 사업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아울러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및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 관심을 갖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림.	○ 향후 감사자료 비교란에 목별 사업내용(성과 및 운영실적)을 기재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국도비 반환내역 (공통18-건의)	○불용액 발생사유 중 ‘대상자 책정 후 미사용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사항은 바우처 수령 후 장기외출 등으로 쓰지 못하는 대상자를 파악하여 관리를 하도록 하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집 방법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바람.	○저소득 취약계층에 재가간병, 가사지원 등 가사 간병방문 관리사 서비스 유형에 따라 바우처 장기 미사용자를 수시로 조회하여 서비스 이용을 독려하고 중단에 따른 신규대상자를 수시 발굴·선정함으로써 적기에 바우처 서비스 제공으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음.	
○불용액 발생현황 (공통19-건의)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지원 종사자 결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을 통해 종사자의 복지 증진에 신경써주기 바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원에 따른 채용 공고는 워크넷, 복지넷,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등 활용하여 수시로 모집 공고하고 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매월 120여명에게 대우수당을 월 140천원~160천원(연간 221,727천원)을 지급하고 있음.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현실화를 적극 건의 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주민지원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괴산음성증평진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관련 감사자가 기타사항을 알 수 있도록 비고란에 표기 등 감사자료 작성 시 서식의 일부 변경이 요구됨. (구성인원 9명인 위원회가 12회 소집에 120만원만 지출되었다고 표기되어 1명만 참석했다고 보여짐)	○괴산·음성·증평·진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중부4군 9명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수당은 각 군이 해당 군 소속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음성군 심의위원 2명으로 19년 12회, 20년 1회, 회의 참석에 따른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 심의위원 1명에 대하여 19년 1,200천원, 20년 100천원을 지급하였음. ○향후 행정감사 자료 제출시 비고란에 음성군 소속 위원 참석수를 기입하여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장애인 등 교통약자 교통수단 위탁현황 (부서 1-건의)	○인접 시군의 경우 타지방에서 해당시군을 방문할 때 리프트차량 사용을 사전예약 하면 이용할 수가 있는 반면, 타지방에서 음성군을 방문하였을 때 관외주민일 경우 예약 및 사용이 불가함. 이에 대해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주민지원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 이동서비스 제공기관인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음성군 장애인연합회는 음성군을 방문한 관외주민을 위해 예약을 통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관외 장애인에게 23건, 관내 장애인에게 6,091건의 이동서비스를 제공함. ○관련 부서 및 단체와 협업하여 관내 장애인분들은 물론 관내를 방문하는 관외 장애인분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이동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 5-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아울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 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개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고 하겠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시 공문 시행문에 물품구입 시 관내업체 이용을 우선권고하는 내용을 반드시 명시 하도록 별도 교육을 통하여 철저히 관리하겠음.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공통 5-시정)	○ 보조금 사업자는 거래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을 예입하고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하며 지도감독부서는 자부담 입금통장으로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이에 지도 감독부서는 보조금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예치된 입금통장을 확인 후 교부 결정하기 바람.	○ 보조사업 수행 시 교부결정 전 사업계획서와 자부담 입금을 확인하고 교부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후 보조사업 추진 시에도 반드시 자부담 능력 유무를 체크하고 사업계획을 철저히 관리하여 보조사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축제 및 행사 지원 현황 (공통6-건의)	○ 각종 행사 지원 시 자부담 의무비율 설정하여 균형 있는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 각종 행사 지원 시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자부담 의무비율을 검토하고 보조금 집행 시 균형 있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의정활동 지적 사항 조치내역 (공통 9-건의)	○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옥상 활용방안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여주기 바람	○ 현재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이 이용 중으로 향후 정상운영 시 옥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설문 조사를 통해 군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활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공사비 3천 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각종 건립 공사 등의 건축사업 추진 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추진 단계에서부터 예상되는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설계변경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겠음.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 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 내역 (공통13-시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담당자들로 하여금 설계변경 등의 사유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교육하겠으며 추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에도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바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팀장과 부서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행정위원회 횟수와 위원 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하지 않도록 교육함과 동시에 행정사무감사 서류 작성 시 철저한 사전 확인을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겠음.	
○예산변경내역 (공통26-시정)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 극히 제한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하나, 예측하지 못한 재원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아울러 예산편성 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사업 추진 시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지침의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편성 시에도 사전 교육을 통해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도 그 취지에 맞도록 집행하여 의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시니어클럽 예산지원 및 운영실적 (부서 1-건의)	○시니어클럽 관련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 등 제도개선 노력 및 지역 내 활동 수요가 있으면서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발굴·추진하기 바람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접경부분 잡초제거 등에 시니어클럽에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바람.	○시니어클럽 사업활성화 및 사업개발노력 - 사업활성화를 위한 관련단체 및 지자체 업무협약 진행 (2022 이전공공기관 지역공헌 시범사업 업무협약, 2022 국제로타리클럽 시장형사업단 차량지원 업무협약) - 사회적 필요성에 따른 신규사업 개발 (2021 방역활동도우미, 2022 석유에너지파수꾼) - 사업활성화 위한 시장형사업단 리모델링 추진예정 (2021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시군 선정, 상사업비 활용) - 2022년 상반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원회 개최하여 제도개선 및 일자리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하겠음. ○공익형 일자리(잡초제거활동) 사업단 구성 검토 - 잡초제거는 신체활동의 강도가 높아(무릎굽히기, 어지럼증 유발 등) 건강문제 및 민원발생이 커, 어르신 대상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사료됨. - 더욱이, 시가지 도로 및 인도 접경부분에서의 앉은 자세로의 잡초제거 활동은 교통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부적합함. - 공공근로 등 관련 타부서 협의하여 인력배치 모색 필요.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중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 주기 바람.	○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생극면 생리 570 외 2필지는 2018 행정사무감사 개선요구에 따라 토지합병 및 지목변경 완료(2018. 12. 19.) ○ 원남면 조촌리 522번지 외 3필지는 혁신전략실 소관 행정재산으로 관리되었으나,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사업부지 변경으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없어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남저수지 체험휴양 관광자원화 조성사업에 활용하고자 재산관리관 변경함 (2021. 10.) ○ 향후 원남저수지 체험휴양관광자원화 조성사업 추진 시 토지활용방안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재산 토지정리를 검토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의정활동 지적사항 조치내역 (공통 9-건의)	○ 말부리유원지는 국도 및 국지도가 생기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사실상 유원지 역할을 못 하고 있는바, 작년 군정질문에 대한 조치로 가로등 보수 및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부지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장기적으로 개발 및 관리계획 또는 용도 변경 절차를 구체화하여야 할 것임.	○ 현재 말부리유원지는 국도 37호선 및 국지도 82호선이 확장·개통됨에 따라 접근성이 현저히 저하되어 유원지로서의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며, ○ 향후 관리계획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2030년 읍성 군관리계획 재정비(도시과)를 통해 군관리계획(유원지) 변경 할 계획임. ○ 또한 말부리 유원지 내 산책로 정비, 제초작업, 시설 유지관리 등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사비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 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공사비 3천이상 설계변경 현황 -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건축) 공사 -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전기) 공사 ○설계변경 사유 - 음성군 생활문화센터 예산 부족 문제로 제외된 공종(방수공사, 단열재 시공)추가 ※ 설계변경 계약심사: 문화체육과-16614(2021. 6. 16.)호 ○향후계획 -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 과정에서 누락되는 공종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비 산출에도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보조금 정산지연 현황 (공통 33-건의)	○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정산 지연 사업 현황 - 2020 음성문화원 운영비(상반기): 23일 지연 ○ 조치결과 - 2020년 상반기 음성문화원 운영비 정산보고서 지연 건에 대하여는 2022 본예산 편성 시 지연 제출 교부금액의 10% 삭감 편성 (31,024천원 → 27,921천원) ○ 향후계획 - 향후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정산서 지연 제출에 따른 보조금 증액 불가 및 일정 비율 보조금 감액 등 패널티 규정 강력 적용 방침 통보	
○ 코로나19 관련 사업 추진현황 (공통 34-건의)	○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 관내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충청북도 문화예술인 긴급생계 지원사업은 21년도 사업으로 예술인활동증명,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제외 등 지원조건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문화예술인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 21년 12월말 기준 지원대상자 50명 중 32명에게 지원금 지급하고 사업을 완료하였음. ○ 앞으로 이와 같은 지원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건의하여 관내 문화예술인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문화재 관리 및 보수내역 (부서 1-건의)	○군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힘써주시고, 재산권 침해를 우려한 토지소유자의 비협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의견을 나누어 문화재를 보존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람.	○현재 군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는 31개소로 매년 상반기, 하반기 향토문화유적 점검을 통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며, ○향후 군지정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비협조적인 문화재 부지 토지 소유자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2-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감사현황 - 「2021 민간위탁사무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 알림」 (기획감사실-15620, 2021. 10. 15.) ▶ 민간위탁사무 자체감사 미실시 지적사항 - 「2021년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사무감사 계획 수립」 (문화체육과-34600호, 2021. 12. 16.) · 사무감사 기간(2021. 12. 21. ~ 23.) - 「2021년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무감사 계획 수립」 (문화체육과-32926호, 2021. 12. 1.) · 사무감사 기간(2021. 12. 14. ~ 16.) ○ 감사결과 - 「2021년 음성군 문화예술체험촌 사무감사 결과 보고」 (문화체육과-323호, 2022. 1. 5.) · 수입금(사용료) 관리 소홀 등 주의 3건 지적, 조치 - 「2021년 음성군 품바재생예술체험촌 사무감사 결과 보고」 (문화체육과-35028호, 2021. 12. 20.) · 개인정보 동의 여부 일부 누락 등 주의 3건 지적 조치 ○ 향후계획 - 조치 결과 이행 여부를 포함한 체험촌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 지도·점검 수행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세무조사 전담팀 설치 (부서 1-건의)	○지방세 부과·징수는 지방자치 정착 실현을 위해 핵심적인 요소임. 군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인 정기세무 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세무조사가 세수확보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보다 효율적인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전담팀 신설을 적극 검토 바람.	○최근 3년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건 / 백만원) <table border="1"><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2021년</th><th colspan="2">2020년</th><th colspan="2">2019년</th></tr><tr><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h>건수</th><th>금액</th></tr><tr><td>계</td><td>457</td><td>788</td><td>1,037</td><td>1,619</td><td>181</td><td>1,315</td></tr><tr><td>정기조사</td><td>72</td><td>505</td><td>99</td><td>815</td><td>100</td><td>956</td></tr><tr><td>기획조사</td><td>385</td><td>283</td><td>937</td><td>804</td><td>81</td><td>359</td></tr></table> ※ '21년 행안부 세무조사 기본계획(코로나19로 70%내외 감축 권고) ○최근 3년간 기업체 증가 현황 (단위 : 개소) <table border="1"><tr><th>구분</th><th>2021년</th><th>2020년</th><th>2019년</th><th>2018년</th></tr><tr><td>기업체</td><td>2,693</td><td>2,611</td><td>2,482</td><td>2,353</td></tr></table> ※ 기업체 수 3년 평균 4.7% 증가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관내 기업체 수 증가에 따른 법인 세무조사 행정수요 증가로 보다 효율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위해 세무 조사팀 신설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 필요. ○조사인력 증원 및 세무조사팀 신설 등 효과적인 인력운영을 통한 법인 조사범위 확대 및 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로 세수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음.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7	788	1,037	1,619	181	1,315	정기조사	72	505	99	815	100	956	기획조사	385	283	937	804	81	359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기업체	2,693	2,611	2,482	2,353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457	788	1,037	1,619	181	1,315																																									
정기조사	72	505	99	815	100	956																																									
기획조사	385	283	937	804	81	359																																									
구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기업체	2,693	2,611	2,482	2,353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군금고 운용 보고 관련 (부서 2-시정)	○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금고운용보고) 규정에 의거 군금고 은행의 회계별 자금운용 상황 및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보고한다라고 규정 ○ 군금고 운영보고가 매년 소홀히 운영되고 있는데 반기별로 보고를 받아 군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 군금고 현황 - 약정금고: NH농협은행 음성군지부 - 약정기간: 2021. 1. 1 ~ 2024. 12. 31.(4년간) ○ 2021년 회계 군금고 운영상황 보고 현황 - 보고시기: 반기별 - 2021년 상반기: 2021. 7. 14. - 2021년 하반기: 2022. 1. 25. ○ 보고 내용 - 군금고 현황 및 자금운용 상황 -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자료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 향후계획 - 금고운영 상황에 대하여 반기별 보고 이행 준수 공문을 발송하고, 보고 내용에 대한 운용실태 점검과 철저한 분석으로 내실 있게 금고 운영 하겠음.	

회 제 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관급자재 구입관련 (부서 1-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내 업체 이용 바람 ○수의계약에 있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정한 수의계약 체결 바람	○각종 사업 발주 시 관내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 하도록 사업부서에 협조 공문 시달하였으며, 관내 생산 물품이 없는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내 생산품을 최우선으로 구매하겠음. ○사업대상자와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주기 바람.	○ 지적공부 현행화 추진계획 수립하였음. 『민원과1337-(2022.01.11.)호』 - 근거: 행정사무감사 건의 및 공간정보관리법 제64조 - 기간: 22. 1. ~ 12.(과거년도 포함_지속추진) - 대상: 민간·공공 인허가 사업완료 후 토지이동(지목변경, 합병 등)이 누락된 토지 및 국공유재산	
○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 바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각종 수치, 합계 등을 정확히 표기하여 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상세히 검토 후 제출하겠음. ○ 위원들의 위·해촉 현황 확인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회 소집에 따른 수당 지급 등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대소시장 주차장은 지적공부정리 완료하였고 감곡 시장 주차장은 조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공부정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경제과-79382(2021. 11. 29.)]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공통 5-건의)	○ 각종 보조금 지급 정산 현황 중 역량 강화사업비가 40%에 육박하는 곳이 있음. 각종 보조금 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조정하도록 하고 관행적인 편성을 지양하도록 지도·점검하기 바라며, 역량강화사업비를 조정하여 필요한 시설 등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 향후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예산 낭비 요인이 발생 하지 않도록 철저히 분석하여 역량강화사업비 등 관행적인 편성을 지양하고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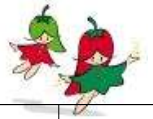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사업별 설계 변경 내역 및 사유 (공통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향후 사업 추진 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설계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부득이 설계변경을 실시할 경우 설계 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21. 12. 9. 주식회사 원○이텍 정산 완료. ○해당 업체가 2022년도 보조금 사업 신청 시 감액 적용 예정이며 보조금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관내 기업체 휴폐업 현황 (부서 1-건의)	○2019년 임차 공장에 허가없이 폐기물을 불법반입하여 투기하려는 사업자를 주민의 신고로 적발한 사실이 있는바, 위반사항 및 의심사례가 있을 시 즉시 신고토록 하는 관련 홍보자료를 주민에게 제작·배포하기 바람. 아울러 장기간 휴업 및 폐업 상태로 방치된 업체에 대한 주기 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폐기물 업자들의 폐기물 투기를 방지하고,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하게 대처하여 관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을 하기 바람.	○2022. 2. 7. 휴·폐업 공장 내 폐기물 불법 투기 행위 근절 주민 홍보(신고)공문 각 읍면 발송. [경제과-7731(2022.2.7.)] ○휴·폐업 공장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환경과 환경지도팀과 협업하여 폐기물 투기 의심업체 지도 점검 철저.	
○유료직업소개소 현황 (부서 2-건의)	○다수 외국인 근로 기업체 및 직업소개소에 외국인들로 하여금 수도권 방문 자제 요청 및 코로나 경각심 고취 홍보	○2021년 직업소개소 방역점검 시 지속적으로 대표자에게 알선 업무 시 내·외국인 타지역 자제 요청 다국어 번역 안내문 전달. ○2022년 현재 각 대표자 및 종사원에게 문자 및 전화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백신접종 홍보 및 지속적으로 코로나 경각심 고취 홍보 예정.	

경 제 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 (부서 3-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보건진료소 등 각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당초 설계상의 용량과 실제 발전용량이 일치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각 시설 발전량, 가동현황 등의 발전데이터를 수집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의 사후 관리체계 확립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REMS)을 통해 음성군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량, 가동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특히, 경로당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332개)에 대해서는 매년 일제점검을 통해 하자발생유무를 조사한 후 보증기간 내에 있는 하자는 무상AS요청, 보증기간 만료 시설은 자체예산을 통해 수리하고 있음.	
○음성천연가스 발전소 추진현황 (부서 4-건의)	○천연가스발전소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협의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자치행정과의 갈등조정위원회는 「음성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성군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음성군이 어느정도 해당 정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나, ○음성천연가스발전소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 추진되고 결정권한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지는 것으로 우리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권한 밖의 사업임. ○중앙부처의 공공정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갈등조정 협의회를 통해 협의되어야 할 사안이나 반대 주민들이 이미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앙)행정심판 등을 제기하여 패소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신뢰하지 않고 있어 갈등조정기관을 통한 갈등 해소방안 마련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대안 등을 지속 모색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음성천연가스 발전소 추진현황 (부서 4-건의)	○반대를 하고 있는 주민분들이 법적 처분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 노력 당부.	○반대 주민분들의 피해 최소화와 지원을 위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11차례 대화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로 지난 1월 18일 주민과 한국동서발전과의 대화를 실내체육관에서 주민 150여명과 동서발전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성사시켰음.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적인 분쟁 취하와 지원 사업의 성실한 협의를 약속하며 주민분들께 발전소 건설 준비작업만 허용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음. ○2022년 2월 현재 완전하지 않으나 일부 마을과는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속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사업을 심도 있게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음.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일부 반대를 지속하고 있는 마을에 대해서도 원만히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경 제 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부서 5-건의)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관련, 시장별 수요조사를 하여 시장상인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시장 고객유치 및 시장경쟁력 제고 그리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기 바랍.	○현재 관내 5개 전통시장 중 무극, 삼성시장을 제외한 3개 전통시장(음성, 대소, 감곡)에 아케이드 미설치. ○미설치되어 있는 시장 상인회와 협의 후 설치 의사가 있는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 신청 등 검토. ○그 외 전통시장 고객유치 및 시장 경쟁력 제고,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정책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지반침하지역 유지·보수 및 개선 (부서 6-건의)	○옛 광산지역의 수해 등으로 인한 땅꺼짐 현상은 지역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항임. 향후 지반침하 징후 등 특이사항 발견 시 담당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바,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을 조사하고 지반 안정성 재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적극 대처하기 바람.	○과거 광산개발지역에 대하여 지반침하 징후 등을 지속적으로 유관기관과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 있음. ○지반침하 발생 시 즉각 유관기관과 현장을 확인 하여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로 인한 원인 시 지반안정성조사 및 지반보강 등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전통시장 고객센터 화장실 개방 (부서 7-건의)	○상인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로 이용 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통시장 고객센터 내 공중화장실은 항시 개방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관내 5개 전통시장 대상 고객지원센터 내 공중 화장실 상시 개방 및 철저 관리 협조 요청 실시 [경제과-85494(2021.12.22.)호 공문 발송] → 2022. 2. 현재 5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 화장실 상시 개방 운영 중 ○앞으로도 관내 5개 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공중 화장실 상시 개방을 통하여 상인 및 전통시장 이용 고객분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8-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2021. 12. 27.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가 자체(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자체(종합)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 처리 결과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지 않고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농 정 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음성화훼유통센터 준공시 용도에 맞게 토지 합병등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하였음. 향후 사업 추진시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일이 없도록 토지정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 각종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 5-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아울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 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민간위탁사업별 현황 (공통29-건의)	○음성군의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고속도로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민원이 있는바,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재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민간위탁사업자는 농업법인으로 농산물 판매 전문성이 미흡하여 향후 마케팅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한 노후화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고객접근성을 높이고, 음성군 농업인 지원시설 운영관리 조례 개정을 통한 로컬푸드 행복장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음.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19년에 3개사업의 보조금 정산서 제출이 지연 되었으며, 현재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음. 추후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정산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귀농귀촌지원 (부서 1-건의)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지원 사업과 같이 음성군 귀농·귀촌자에게도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주기 바람.	○매년 상·하반기 공개모집을 통해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귀농 귀촌지원센터 상담시 건축과에서 추진중인 농촌 주택개량사업도 같이 안내하여 음성군 귀농·귀촌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주거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귀농귀촌 지원현황 (부서 2-시정)	○농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경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농지 실태조사를 통하여 2년 이내에 타용도로 이용 시 세정과의 협조하여 취득세 추징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누차 강조하는 사항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지원된 보조 및 융자사업에 대한 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2021.2.18. 세정과의 취득세 감면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농지에 대한 타용도 이용(직불금 및 농지이용 실태조사) 현황을 통보하였으며, 2021년 농지이용 실태 조사결과 처분 의무통지 명단을 세정과로 통보하여 취득세 추징에 적극 협조하겠음. ○융자지원 및 농기계 지원사업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매년 연 1회 실태조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관련 보조사업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도정시설 설치 (부서 3-건의)	○대소, 삼성 지역에 도정 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다올찬 쌀의 판매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삼성, 대소 지역 연간 쌀 생산량은 약 6,000톤이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통합RPC 및 우농RPC에서 1일 100톤 정도 가공이 가능한 상황으로 현재 가공능력은 적합하다고 사료됨. ○다올찬 쌀의 판매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해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도정공장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사업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보조사업 등 지원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개별 육묘장 지원 등 (부서 4-건의)	○자가 개별 육묘장 운영 농가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기 바람. ○군육묘장을 운영함에 있어 1차 보급에 그치지 않고 2, 3차까지 다수품종의 육묘를 재배·보급하여 일손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 바람.	○자가 개별 육묘장 운영 농가 지원을 위한 못자리 조성용 상토 지원사업을 현재 시행 중이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영농자재(비닐, 부직포 등)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 및 하반기 수요조사 시행 등으로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5-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2021. 12. 27.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가 자체(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추진하여 자체(종합)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음.	

축산식품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각종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 5-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아울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음.	
○ 공사비3천이상 설계 변경내역 (공통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 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당초설계 시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음. 부득이한 설계 변경 시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겠음.	

축산식품과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바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팀장과 부서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먹을거리위원회, 식생활교육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시 음성군 각종 위원회 등 수당 지급 규정 제5조 (수당 지급액 기준)에 의거 참석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AI·구제역·돼지열병 (부서 1-건의)	○황골방죽의 수혜자에 대한 대책시설을 마련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용도 폐지를 농어촌공사에 요구하여 AI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황골저수지(농업생산기반시설)의 용도폐지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에 따라 ‘폐지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에 가능하나, 대체시설비 및 대체관정 등 시설 완비에 군비 2억원 정도 투입 예상 및 군민 수혜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한국농어촌 공사 음성지사와 협의하여 2022년 가을철 저수지의 물을 빼어, 겨울철 저수지에 철새에 의한 AI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관내저수지 관리 (부서 2-시정)	○맹동저수지 낚시터 간이화장실 점검	○2021. 12. 10. 맹동저수지 내 노후화된 간이화장실 10개 중 1개는 철거, 2개는 개보수 완료하였으며, 7개는 출입제한 등 폐쇄 조치한 후 3월말까지 철거하여 우리군 찾는 유어객에게 쾌적한 환경의 편의시설 제공 [축산식품과-39883호(2021. 12. 13.)] ※ 관내 노후 화장실 공유수면 낚시터: 7개소 - 노후 화장실: 11개 - 조치결과: 4개 철거/ 7개 출입제한 등 폐쇄조치 및 3월말 철거[축산식품과-3189(2022. 1. 27.)]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현황 (부서 3-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관련, 우수한 지역 농축산물 공급 확대에 힘써주기 바람.	○'22학년도 학교급식 지원사업 계획 지역산 구입 조건 (40% 이상)을 설정하여 지역산 공급확대 근거 마련 [※축산식품과-2187호(2022. 1. 20.)] <table><tr><th>구분</th><th>조치결과 내역</th><th>비고</th></tr><tr><td>2022년</td><td>-사업명: 학교급식 품질향상 사업 -사업비: 800백만원(군비 100%) -지원조건: 보조금 중 40% 이상 지역산 농특산물 구매 조건 설정 -목표: 농특산물 공급액 중 지역산 비율 50%이상('21년 44.3% 실적) -기대효과: 지역산 농축산물 소비 및 농가소득 상승</td><td>○지역산 품목 - 쌀 - 농·축산물 ○우수농특산물 - 무농약 - 유기 - 무항생제 - GAP</td></tr></table> ○농축산물 생산자·판매자·소비자 홍보를 통한 지역 농축산물 공급확대 계획 → ‘음성소식(월간)’지를 통한 농산물 생산·판매자 및 소비자(학교·로컬푸드판매장 등)를 연결하여 지역산 소비유통 촉진 → ‘음성산 농축산물 현물지원(연8회)’ 보도자료 제공 (분기별 1회 이상)으로 지역산 농축산물 홍보	구분	조치결과 내역	비고	2022년	-사업명: 학교급식 품질향상 사업 -사업비: 800백만원(군비 100%) -지원조건: 보조금 중 40% 이상 지역산 농특산물 구매 조건 설정 -목표: 농특산물 공급액 중 지역산 비율 50%이상('21년 44.3% 실적) -기대효과: 지역산 농축산물 소비 및 농가소득 상승	○지역산 품목 - 쌀 - 농·축산물 ○우수농특산물 - 무농약 - 유기 - 무항생제 - GAP	
구분	조치결과 내역	비고							
2022년	-사업명: 학교급식 품질향상 사업 -사업비: 800백만원(군비 100%) -지원조건: 보조금 중 40% 이상 지역산 농특산물 구매 조건 설정 -목표: 농특산물 공급액 중 지역산 비율 50%이상('21년 44.3% 실적) -기대효과: 지역산 농축산물 소비 및 농가소득 상승	○지역산 품목 - 쌀 - 농·축산물 ○우수농특산물 - 무농약 - 유기 - 무항생제 - GAP							

축산식품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축산악취개선사업 (부서 4-건의)	○축산악취개선사업에 있어서 사양관리 방향으로는 악취 저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시설개선사업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하여 양돈농가주와 인근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람.	○전년도 축산 악취민원은 99건이 발생하였으며, 양돈농가의 악취민원은 71%인 70건으로 주로 축사 및 분뇨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고 있음. ○우리군 양돈농가의 사육방식은 유창돈사 구조로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무창돈사로 사육 환경이 전환되어야 하나, 양돈농가의 선호 사육두수 5,000두 (모돈 500두) 기준으로 현대화 무창돈사로 재 건축 시에는 62억원(모돈 1두당 24백만원)의 소요 재원이 발생되어 재원 조달 등의 문제로 축사 재 건축 등에 어려움이 있음. ○양돈농가가 노후화된 축사시설을 현대화사업 등으로 축산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양돈농가 및 한돈협회 월례회의 시 수시로 계도·홍보하고 있음. ○향후 인근 주민과 공존하는 축산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 금년도 양돈농가의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육자80% 자담 20%) · 맹동면 영진제2농장 분뇨처리시설 밀폐 및 액비 순환시스템 설치시설(1,120백만원) · 원남면 큰산농장 축사시설 밀폐 및 시설보완 등(250백만원) ※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신청안내: 4회 · 2021년 축사시설 현대화 신청안내(1.9./4.27/5.31/8.2/11.4) · 축산분야 2022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신청접수(2021.1.19.)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양봉농가등록의무 홍보 (부서 5-건의)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봉농가의 등록의무)에 따라 토봉10군 이상, 양봉30군 이상 농가는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고, 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된 꿀을 판매 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바,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기 바람.	○양봉등록 의무화: 양봉산업법(2019. 8. 27. 제정·공포, 2020. 8. 28. 시행) ○음성군 양봉농가 등록현황: 등록대상 농가 159농가 중 153 농가로 등록률은 약 96%로 등록률이 매우 높은 상황임. ○양봉등록 홍보는 각 읍·면사무소, 양봉협회음성군지부, 토종벌연구회, 마을이장 등을 통해 꾸준히 실시해 왔음. ○양봉등록 홍보공문: 축산식품과-12418호(‘21. 3. 30.), 19319 호(‘21. 5. 28.), 26888호(‘21. 8. 10.), 38654호(‘21. 12. 1.) ○미등록 농가는 사업장 부지확보(임대계약 등)에 어려움이 있어 양봉등록이 어려운 상황으로 사업장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등록을 추진하겠음. ○2022년도 양봉관련 보조사업 추진 시 양봉등록농가 우선 순위 배정 및 미등록농가 사업배정 패널티 부여 실시.	

축산식품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로컬푸드 상품 규격화 등 (부서 6-건의)	○로컬푸드 상품의 포장지를 규격화하고, 라벨에 생산자, 중량 등 기재내용의 표준안을 마련하도록 하며, 공급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하여 음성군 로컬푸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체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관내 로컬푸드 직매장에 로컬푸드 상품의 표준규격 및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공문[축산식품과 -38223(2021.11.27.)] 시달 후 방문 점검을 하였으며, 분기별 생산자 및 공급자를 대상으로 표준규격을 제대로 표기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교육하여 체제 개선에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종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람.	○산림녹지과 소관 봉학골산림욕장 외 7개의 행정재산이 대부분 1필지 내지 2필지로 관리되고 있으나 백야자연휴양림 및 현재 조성 중인 금왕 용담산 근린공원의 경우 필지 수가 많아 지목변경 및 토지합병 등 필지 정리를 실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 5-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기존 보조사업자들이 관내업체 위주로 물품구입을 진행하고 있으나 보조금 교부결정 시 교부조건에 관내업체 물품 우선사용조건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 시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겠음.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공통13-시정)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감사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수레의산 자연 휴양림 운영 (부서 1-건의)	○자연휴양림 신청 시 군민에게 30% 우선 배정한 이후, 타시군 일반 배정 기간에도 음성군민에 한하여 우선 배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자연휴양림 지역주민 우선예약안 조정 - 군민에게 30일 동안 40% 우선 배정 실시 - 타시군 일반 배정 기간에도 음성군민에 한하여 우선배정(2022. 1. 1.부 시행) - 선거법 검토 결과 저촉 사항 없음	
○도시공원 유지 관리 현황 (부서 2-건의)	○공원관리에 대한 민원이 많아 관리 인원 보충이 요구되며, 더 나아가 전담팀 신설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매년 증가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유지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팀 내 인원 충원 및 조직체계 개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 5-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아울러 지방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관내업체의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 하겠음.	
○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당초 설계 시 철저를 기하고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 행정적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 행정심판, 소송, 현황 (공통20-건의)	○ 원남면 삼용리 폐기물 불법투기 관련 등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다수 행정소송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여 행정소송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행정소송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심판, 소송에 만전을 기 하겠음.	

환 경 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환경관련시설 민원접수처리내역 (부서 1-건의)	○환경관련 공장시설 민원 접수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환경관련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음.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현황 (부서 2-건의)	○야간투시경을 조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람.	○야간투시경은 읍·면에 1대씩 배치 완료하였음. - 2021.12.31. 배치완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중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주기 바람.	○ 광역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신매립장과 구매립장은 현재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이 추진중인 사업부지로서 증설사업 준공 후 관련 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비를 추진하겠음.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사업 완료 후 토지를 지목변경·합병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불용액 발생현황 (공통19-건의)	○자부담금 발생으로 인한 슬레이트 처리사업 포기자가 발생하는바, 군비를 추가 부담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부담 비용을 군비로 추가 부담할 경우 이전 연도 (2012년 ~ 2021년) 자부담 가구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며, ○대형면적 건축물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어 수혜 가구 수가 감소되고, 자부담 의사가 있는 사업자도 사업물량 부족으로 제외될 수 있음. ○업체 선정 등 사전 절차를 조기에 실시하여 대기자 포함한 전체 사업물량을 10월 이전에 마무리 하여 불용액 발생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청 소 위 생 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농촌지역 영농 폐기물 수거실적 (부서 1-건의)	○마송3리 국도면 폐비닐 적치물 처리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마송리 621번지 일원에 무분별하게 혼합 적치되어 있던 폐기물을 '21년 11월 희망근로지원 사업 근로자를 활용하여 수거 가능한 영농폐비닐과 폐기물을 선별 분리하였음 ○선별 분리되어 수거 가능한 영농폐비닐 5톤을 '22년 1월에 수거 완료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폐비닐수거보상금(약50만원)을 해당마을에 4월 중 지급 예정임 ○그 외 남아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활용하여 폐기물수수료 납부 후 매립장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지속적으로 해당마을에 안내하였음. ○불법투기방지 현수막을 게시하고 불법투기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음	
○외식업소 지원현황 (부서 2-건의)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의 효과가 좋은바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 하고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2021년도 예산(40,000천원)을 확보하여 외식업소의 입식테이블 설치를 확대 지원하였으며, 사업의 다양한 홍보 및 필요 시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필요한 업소에 시설개선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기타 <광역쓰레기매립장 대체부지> (부서 3-건의)	○광역쓰레기매립장의 대체부지를 미리 확보하는 등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현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식물폐기물은 진천군 2022년 5월, 음성군 2023년 5월부터 각 군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임. ○또한, 소각시설 처리능력을 초과 반입되어 매립되던 가연성 및 음식물폐기물을 2021년부터는 외부 시설로 위탁 처리하여 연간 19,024톤의 매립량을 줄이고 있음. ○현 매립시설의 잔여 용량 측량을 실시할 예정으로 잔여 사용기간을 산정하여, 현 시설 폐쇄 전에 신규시설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4-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2021. 12. 27.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가 자체(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자체(종합)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공사비 3천 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 당초 공사설계시 설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 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음.	
○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공통13-시정)	○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설계변경사유를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작성하겠음	
○ 1년 이상공사중지 (공통16-건의)	○ 돌망태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동절기 갈수기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 원남저수지 관할부서 한국농어촌공사(괴산지사)와 저수지 수위조절 가능 및 공사가능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을 경우 추진하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음성읍민회관 앞 테크 유지보수 (부서 1-건의)	○읍민회관 앞 테크의 노후에 따른 부식이 많이 진행되어 별도 예산을 편성하여 조속히 보수사업을 추진하기 바람	○해당 쉼터는 다수의 주민이 사용하는 장소이며, 시설이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쉼터의 재조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음	
○기타 -소규모사업 용역비 절감대책 (부서 2-건의)	○소규모사업인 읍면사업,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의 사업비 중 용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사업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합동설계반 운영으로 읍·면 사업담당자들과 함께 설계를 추진함으로 용역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토지 경계가 분명하여 민원 발생 소지가 적은 사업 대상지나 비교적 간단한 사업은 직접 설계를 하여 용역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3-건의)	○ 행정재산 정비를 통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주기 바람	○ 사업 준공 전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 합병 등의 공부정리를 통하여 행정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 각종 단속의 보조금 지급 (공통5-건의)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 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관내업체 물품을 구매 할 수 있도록 권고 하겠으며, 보조금 교부 결정시 공문 시행문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 사용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겠음	
○ 공사비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 당초설계 시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고 불가피한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등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겠음.	
○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 사업 설계변경내역 (공통13-시정)	○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지방재정법 관련 규정 준수 (공통 -시정)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예산 편성 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바람.	○출자 또는 출연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음	
○산업단지 추진현황 (부서 1-건의)	○산업단지 편입으로 인한 이주민 대책 마련 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이주마을 조성이나 이주비용 지급 등의 대책을 충분히 마련 후 추진하기 바람.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발생하는 이주민들의 주거 이전과 보상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 협의회 개최, 현장 방문 등 이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애로사항 해소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음.	
○성본산업단지 현황 (부서 2-건의)	○성본산업단지 공공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도 성본에 있는 폐기물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폐기물처리법 제14조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음성군수가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진천·음성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대풍2 산업단지 추진 현황 (부서 3-건의)	○대 풍 제2산업 단지 및 용 산 산업 단지 관련 시행사 및 용역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계획대로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기 바람.	○대풍2산업단지 및 용산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사 및 용역사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안전총괄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정부예산 확보대상사업 (공통23-건의)	○음성 목골 침수위험지역 주민설명회에서 수렴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현재 목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음. 주민설명회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풍수해보험 홍보실적 (부서 1-건의)	○풍수해보험에 대하여 많은 농가가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기 바람.	○풍수해보험 팜플릿 홍보 자료 2,000부 제작 및 지역자율방재단과의 협업, 재해문자전광판 문구 전송, 안전 문화 운동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풍수해보험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음.	
○사업진행 시 신속집행 필요 (부서 2-건의)	○각종 사업 시행 시 감정평가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보상 완료 후 사업을 진행하여 사업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안전총괄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관내 업체 우선 입찰 지원 (부서 3-건의)	○ 법 테두리 안에서 분리발주 가능한 부분은 관내 업체가 입찰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기 바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공사의 분할계약 금지)에 의거, 국가에서 정한 전기·통신, 소방공사 등을 제외한 분할 발주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단, 지방계약법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등의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사업 발주 시 다수의 관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음성군어린이 시설 안전관리 조례」 세부사항 마련 필요 (부서 4-건의)	○ 「음성군어린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마련하지 않은바, 조속히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시행규칙 제정을 검토하기 바람.	○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내 애완동물 반입에 따라 물림 등 위험사고가 발생하여 「음성군어린이시설 안전 관리 조례」에 위험사고 예방을 위한 애완동물 행위 제한 규정 신설을 추진 중임. ※공문시행: 안전총괄과-2958(2022. 2. 4.) ○ 세부규정 마련 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례 개정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겠으며, 관내 어린이시설 안전관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5-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 아울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 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 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관내업체의 제품을 이용하도록 적극 권고하겠으며 교부조건에 관내 물품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겠음.	
○ 의정활동 지적사항 (공통 9-건의)	○ 과거 보상금 지급 또는 교환 등으로 취득한 재산이 소유권 등기를 미필한 경우가 다수 있는 바, 특별조치법을 동원하여 법 시행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전담TF팀 구성 또한 검토하기 바람.	○ 2021년에 총113필지(22,187㎡)에 대한 소유권 확보 하였으며, ○ 2022년에는 전담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나급) 채용하여 소유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	
○ 공사비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 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 사업설계 시 사업내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 하는 일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설계변경 시 필요한 심사절차(일상감사, 계약심사)를 이행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수익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 변경내역 (공통13-시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행정 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설계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2천2백만원 이상 사업 (공통14-건의)	○삼호리 인도가 도로보다 낮게 설치되어 사후보완이 요구됨.	○대소면 삼호리 인도설치공사는 2개년('20, '21)에 걸쳐 시행된 사업으로, 차도높이와 동일한 레벨로 설치하기 위해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토지주들에 반대로 도로구역내 인도를 설치하게 되었음. ○인도사면에 설치된 옹벽블록 안정성을 위해, 차도 보다 낮게 인도설치가 되었으며, 토지매입 없이 인도부 보완이 어려운 실정임. ○별도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시설물을 검토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바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팀장과 부서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위원회 소집 횟수, 참석위원수 및 참석수당 지급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음.	
○예산변경내역 (공통26-시정)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 극히 제한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하나, 예측하지 못한 재원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느바,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아울러 예산편성 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예산편성 시 누락되는 사업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예산이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사업별 현황 (공통29-건의)	○ 특별교통수단 운영 시 기존 위탁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시간이 한정되어 일반군민과 타지역민 이용이 어려운 점이 있었음. ○ 위탁기관 선정 시 보완사항을 전달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현재 음성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시간: 평일 08:00 ~ 19:00, 토요일 09:00 ~ 18:00 ○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관이 금년도 1월부터 음성군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중. 기존 위탁기관의 프로그램에 운영시간을 한정하지 않고, 군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음. ○ 현재는 이용대상이 음성군민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특별교통수단을 연차별로 추가 도입하여 우리군으로 방문하는 타지역민까지 이용될 수 있도록 운영방침 변경할 예정임.	
○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공통33-건의)	○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보조사업자에 대해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감액 등 패널티를 부여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기타 -삼생 ~군자간 농어촌도로 (부서 1-건의)	○삼생 군자간 농어촌도로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여 주시고, 중장기적으로 맹동면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람.	○해당노선은 농어촌도로 104호선으로 전체연장 (맹동저수지까지)L=2.5km 중 750m완료되었으며, '22년 보상비 200백만원을 확보하여 향후사업대상지 보상 예정에 있음. ○맹동저수지까지 3,000백만원 이상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중장기적으로 맹동면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대소면 도로 개설 사항 (부서 2-건의)	○최근 수년간 대소면 내 농어촌도로를 포함하여 개설된 도로가 전무한바,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개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현재 대소면에 진행중인 도로확포장사업으로 내산-내산간(군도19호), 성본-부윤간(농도202호), 대정-대정간(리도210호) 확포장사업등이 있으며, '22년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음. 주민수해도 및 사업성, 음성군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3-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2021. 12. 27.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가 자체(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자체(종합)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종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 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주기 바람.	○ 사업구역 내 토지합병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음. ○ 또한 취득(수용 등)한 토지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해 시설 조성 완료 전 지적공부정리 및 토지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 5-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아울러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 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향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해당사항을 명시하고, 관내업체 물품구매를 적극 유도·장려하도록 조치 하겠음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및 정산현황 (공통 5-시정)	○ 보조금 사업자는 거래통장을 개설하여 자부담을 예입하고 보조금 사업계획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지도감독부서는 자부담 입금통장으로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이에 지도감독부서는 보조금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이 예치된 입금통장을 확인 후 교부결정하기 바람.	○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자부담에 관한사항을 확인시키고, 보조금 교부 전 예치된 자부담금을 확인 후 교부하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각종 단체의 보조금지급 및 정산현황 (공통 5-건의)	○각종 보조금 지급 정산 현황 중 역량 강화사업비가 40%에 육박하는 곳이 있음. 각종 보조금 사업자로 하여금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을 과감히 조정하도록 하고 관행적인 편성을 지양하도록 지도·점검하기 바라며, 역량강화사업비를 조정하여 필요한 시설 등에 더 투입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보조사업자 선정 시 예산낭비 요인을 검토하고, 중간 정산 등을 통해 잔여사업비를 시설사업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추후 군관리계획 재정비 신중 검토 (공통 9-건의)	○추후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신경쓰기 바람. ○저수지 안에 계획관리지역이 있는 등 기존 계획관리지역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특히 유념하여 재검토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힘쓰기 바람	○향후 음성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읍·면별 형평성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사비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당초 설계 시,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설계내역서의 꼼꼼한 검토를 거쳐 내실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설계변경 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적절한 행정적 절차 진행에 철저히 기하겠음.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공통13-시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설계변경내역의 변경 사유 작성 시 상세하고 정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바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팀장과 부서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위원회 소집 및 참석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재확인하여 소집횟수와 참석수당이 상이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면밀히 검토하여 자료를 제출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1-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 규정에 따라 당초 관리부서에서 매년 1회 사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21. 12. 27. 개정된 조례에 의거 자체(종합)감사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강화되었음. ○ 따라서 전문감사 기관의 감사를 통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건 축 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동주택 인허가 관련 (부서 1-건의)	○대소면 이안아파트 진입로 기부채납 관련 기부채납 약속 불이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기부채납 미이행으로 입주자가 피해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기 바람.	○2022년까지 해당 진입로에 대해 확장공사 등을 완료 후 기부채납 예정임. ○기부채납 미 이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음.	
○붕괴위험 건축물 안전관리 (부서 2-건의)	○붕괴위험 건축물 관련 정기적인 안전 진단 후 사후 대책을 강구하고, 현재 거주 중인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군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점유자에게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홍보하기 바람.	○연 3회 이상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중대한 결함 식별 시 사용제한, 주민대피 등 시설물 긴급 안전조치를 실시하겠음. ○소유·점유자에게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입주자 이주를 독려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동주택 지원 관련 (부서 3-건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원 빈도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거나 긴급하게 숙원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로 중복지원 제한을 강화하여 지원조건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음. ○소규모 공동주택에 경우 2017년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대상 144단지 중 26단지를 지원하였으며, 아직 지원을 받지 않은 공동주택단지가 118단지임에 따라 형평성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등을 고려할 때 5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예산 7천만원에서 증액한 1억9천4백만원 예산을 확보하였고, 안전 등 긴급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통해 중복지원 제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 등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빈집정비 관련 (부서 4-건의)	○빈집정비 관련 귀농귀촌자가 빈집을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검토하기 바람.	○2022년도 빈집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빈집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따라 게시 등록 예정임. ○미디어정보과에서 홈페이지 개편 시 빈집정보 게시판을 만들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건 측 과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법규 재정비 (옥외광고물법) (부서 5-건의)	○ 음성군 옥외광고물 조례 제13조4항에 따라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수거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이 없음. 따라서 관련 조례를 재정비하고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바람.	○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상반기 예산액 소진으로 인한 업무공백, 소유권 문제로 인한 민원, 불법 악용사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행중인 지자체에서도 재고하고 있는 사업으로, ○ 음성군에서는 수거보상제 사업의 대안으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연중 불법광고물정비를 실시하고 있음. ○ 또한, 매해 예산규모가 다르고 예산 조기 소진 등 문제로 사업 추진 시 유연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통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을 경우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충북도 내에서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중인 지자체는 없음. ○ 추후 사업 필요성이 인정될 시 불법광고물 정비 보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내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토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6-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게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2021. 12. 27.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가 자체(종합)감사 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실시하도록 개정되어 자체(종합)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운영 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종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 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주기 바람.	○ 완료된 사업 중 토지정리가 필요한 필지를 발굴하여 합병, 정리를 통해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당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행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겠음.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공통13-시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설계변경 사유 작성 시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고 명확하게 기술하여 감사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음.	
○기타 -보건진료소장 지원 근무 배제 (부서 1-건의)	○지역 어르신 관리를 위해 읍면 보건진료소장이 코로나19 지원근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검토 하기 바람.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업무량이 폭증된바, 업무과중에 따른 인원보충 등 직원 복지에 특별히 신경써주기 바람.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으로 전직원이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집중해야하는 상황으로 지원근무에서 배제 하기는 어려우나, ○코로나19 대응인력을 확충하고 본 근무지에서 수행 할 수 있는 업무의 비중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민간위탁 (부서 2-건의)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에 따르면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하고,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결과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요구하도록 하고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음성군 각 부서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대부분 처리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 민간위탁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순차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감사 담당부서만으로는 69개 위탁 기관의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매년 전담TF팀을 구성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여 감사의무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람.	○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9조(사무감사)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회계분야를 포함한 사무분야 감사를 철저히 하여 자체(종합)감사에서 지적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종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주기 바람.	○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음. ○ 다만, 농업기술센터 본청과 친환경농업교육관 및 분석센터 신축부지는 실시계획 변경 중으로 완료 즉시 공부정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다른 3개소 (공정육묘장,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서부·북부지소)는 지목이 달라 토지 합병이 불가능한 상태이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 공정육묘장: 창고부지, 전, 답 ※ 서부·북부지소: 창고부지, 답(농업인실습장으로 활용중임)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 (공통 5-건의)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바람. 아울러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공문시행문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부서가 다소 있으므로 추후 교부조건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내 업체 물품 우선사용 조건을 명시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업체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공사비 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절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 도면, 지방서, 내역서 등 현장 상태와 설계가 상이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대부분으로 착공에 앞서 설계 등 사전검증을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변경 시 실정보고 및 변경심사 또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공통21-시정)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 위원회 소집 횟수와 위원수에 따른 참석수당이 상이한바 차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팀장과 부서장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자료제출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농촌지도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었으며 ‘21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회 1회(21. 4.12.) 소집되었음. 위 협의회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조례 제2733호(2021.6.7.)를 제정 하였으며 조례 제정 후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아 참석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되지 않음. 향후 위 조례에 근거하여 협의회 개최 시 참석위원에 대한 참석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음.	
○보조금 정산 지연 현황 (공통33-건의)	○보조금 정산 지연에 따른 관련 규정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정산지연 사업자에 대해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다음연도 보조금 감액을 적용함으로써 보조금 단체의 인식개선을 유도하여 보조금 정산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2020년 기술보급과 작물환경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정산지연이 된 사업은 4개사업이며, 정산지연 사유는 국가검역병해충인 과수화상병이 지속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발생농가 공적 방제(매몰) 및 예찰업무량 증가로 사업정산이 지연됨. 향후 사업추진 시 정산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농촌 고소득작물 실증재배 (부서 1-건의)	○이 상 기 후 로 인 하 여 방 울 토 마 토 재 배 농 가 에 피 해 가 있 었 던 바, 이 상 기 후 에 대 한 대 책 마 련 및 대 체 작 물 에 대 해 홍 보 하 기 바 람.	○전국적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21년 고온으로 인하여 방울토마토 83농가 64.95ha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조치로 피해 조사현황자료를 보험사에 제공하여 피해농가는 농업 재해 보험 보상을 받았음. ○향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대체작물에 대한 재배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병행하여 농업인이 안정적인 재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또한 이상기후 대비 농작물 관리요령에 대해 홍보(팜플릿, SNS, 보도자료 등)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여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음.	
○각종 시범사업 후 농가 보급 (부서 2-건의)	○각종 시범사업 완료 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시범사업 완료 후 사업성과분석 결과를 농촌지도 사업 보고서를 발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인대상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지역 내 확대 가능한 사업은 보급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사업내용 및 효과 등을 분석한 추진결과를 유관부서 (농정과, 축산식품과)에 공문 발송하여 공유하고 있음. 사업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농업인의 소득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병해충 방제 실적 (부서 3-건의)	○ 과수화상병으로 폐업한 농가들에 대체 작물에 대해 안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농업인들이 원하는 다수성품종 공급 및 효율적인 수매방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 농업기술원 추천 34개 작목에 대한 재배매뉴얼, 농가 희망작물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요청 시 영농기술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음. ○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다수확 품종을 공공비축미로 선정한 지자체는 해당 품종의 보급을 중단하여 보급중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공비축미로 선정된 다수확 품종에 대하여 농가 자율교환을 유도하여 해당 품종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공공비축미 다수확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 재배를 유도하여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미생물 보급 실적 (부서 4-건의)	○ 미생물 보급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2021년 축산미생물 공급량은 190톤(120농가, 1,600회), 농업미생물 144톤(616농가, 3,447회)을 공급하였음. 2022년에는 축산 200톤, 농업 160톤을 공급할 계획이고 친환경 농축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미생물 보급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종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 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지적부서에서는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과 같이 지목변경을 시행하고 토지를 합병하여 행정재산의 이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공부정리에 힘써주기 바람.	○ 지적부서의 공공용지 일제정비에 적극 협조하여 지적공부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사비 3천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당초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음.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공통13-시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설계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작성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예산변경내역 (공통26-시정)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불가피한 상황에 극히 제한적으로 제도를 활용해야하나, 예측하지 못한 재원을 손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음. ○예산 편성의 사전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느바, 예산의 변경, 이용, 전용은 취지에 맞게 최소화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의 효율을 기해야 할 것임. ○아울러 예산편성 시 교육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업무담당자의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여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 행정재산 현황 (공통 3-건의)	○지적관리 부서에서 공공용지에 대한 합병·정리를 중용하지 않는 이상 사업부서에서 선제적으로 토지합병을 신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공공용지에 각종 사업 완료 후 토지합병을 처리하지 않은 채 사업을 완료시키는 경우가 많음. ○각 사업부서에서는 과다 필지로 관리 되는 공공시설의 토지정리를 통하여 필지의 수를 줄임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합병정리 대상 재산은 2개소로 - 감곡생활체육공원: 21. 12. 6. 토지합병 완료 (종전 43필지에서 5필지(지목별)로 정리) - 삼성생활체육공원: 현재군계획시설(체육시설)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생활체육공원 시설개선사업 준공 후 필지 합병 진행 예정임.('22년 말)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공사비 3천만원 이상 설계변경내역 (공통12-시정)	○모든 부서 공통사항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계속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는 사례가 빈번하고, 여러 항목 중 큰 차이로 증감되는 부분은 당초 설계를 제대로 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음.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설계변경 시 설계변경심사 이행여부 등 행정적 절차 검토 또한 철저히 하기 바람.	○당초 설계 시 현장실정 및 공사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변경을 최소화 하도록 하며, 부득이한 설계변경 시 행정적 절차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음.	
○수의계약 중 공사비 1천만원 이상사업 설계변경내역 (공통13-시정)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설계변경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감사자로 하여금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설계변경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작성토록 하겠음.	



건 명	시 정 · 건 의 요 구 사 항	조 치 결 과 및 계 획	비 고
○시설별 임대 내역 등 (부서 1-건의)	○시설 임대 후 공실이 생길 시 사전예약 및 체육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현재 관내 실내체육관 및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부대시설을 관내 체육단체들에게 임대운영 중임. ○시설 임대 후 장기 공실이 생기거나 임대만료 시점 도래 시 공실(만료) 상황을 음성체육회와 협조하여 다양한 관내 체육단체가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기타 (부서 2-건의)	○축구장을 야구연습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관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과 야구장 등은 시설 용도에 맞게 설계되었으며, 종목별 인조잔디의 충진재 비율 등이 달라 축구장에서 야구연습을 할 경우 경도가 강한 야구공의 타격에 의한 충격으로 잔디가 탈락될 우려가 있음. ○또한, 감곡생활체육공원 야구전용구장은 주민안전을 위해 야구공이 구장 외부로 날아오지 않도록 외부 가림막 및 펜스 등이 쳐져 있는 반면, 생활체육공원 축구장은 오픈형 시설로 야구연습을 할 경우 생활 체육공원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야구연습공간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